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482
----------	-----

제출년월일 : 2022. 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우리 군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 신청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 제품의 원료 사용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료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 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료의 감경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 1)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2022년 예산에 591백만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12.24. ~ 2022.01.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실-18398, 2021.12.16.)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실-18398, 2021.12.16.)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가족복지과-46447, 2021.12.09.), 의견수용(기술지원과-8881, 2021.12.10.)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2(평창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제조·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센터 시설물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 상품 생산을 위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제조·가공한 생산물을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3.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
4. 군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상품화 기술지원

제2장 운영 및 이용

제5조(운영)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 농업인 등이 가공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관리 감독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 ① 가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의 사용신청서, 원산지 증명서,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자는 관리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가공원료의 사용) ① 사용자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다만,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제8조(사용료) ① 군수는 구입가격과 농업인들의 부담을 감안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가공장비 사용료를 산정하고,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부 받아야 한다.

② 가공장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경)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기대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공장비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업적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5.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식품위생 관련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약정기간 중 관련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이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은 판매 가능한 법적조치를 마친 후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6. 가공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2조(대장비치) 가공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원산지 및 생산자 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4.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 승인서 (별지 제4호 서식)
5. 생산·작업일지 (별지 제5호 서식)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 사용료 결정, 사업자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 결정사항
4. 그 밖의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부서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인, 가공업체 대표
3. 평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4. 그 밖에 농산물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1. 단순하거나 긴급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식품 가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산정기준(제8조 관련)

기종명	규격	구입 가격	잔존 가격	수리비계수	내구 연한	1일 사용료 징수 항목			1일 사용료 (A+B)*C
						감가 상각비 (A)	수리비 (B)	예상사용일수 (C)	

감가상각비: $(\text{구입가격} - \text{잔존가격}) \div \text{내구년수}$

수리비: $\text{구입가격} \times \text{수리비계수}(0.05)$

[별지 제1호 서식]

가공시설 사용신청서

1. 신청인			
상호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성별 (해당란에 ○표)	남 여
연락처	일반 :		휴대폰 :
주소			
2. 사용시설 현황			
시설명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소재지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2 (농업기술센터 내)		
신청기간	20 . . . ~ 20 . . .		
신청목적	평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		
사용료	평창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용조건	평창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신청인(대표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공통)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담당직원 확인사항	개인 또는 법인 구성원의 평창군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		
개인정보 제공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 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가공시설 사용 승인서

승인번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0 -		
1. 신청자			
상호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 소			
2. 승인내용			
시 설 명	평창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소 재 지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2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내)		
사용목적	평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		
사용기간	20 . . . ~ 20 . . .		
3. 특이사항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내 가공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오니 승인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평 창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뒷면

승 인 조 건

1. 평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가공시설 사용을 승인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가공시설 이용 후 부과되는 사용료를 평창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4.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5.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주요 목적인 농가공경영체 육성과 향후 독립 경영을 위해 사용자는 사용 승인 기간 동안 가공센터 직원들의 지도하에 제품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가공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생 산 · 작 업 일 지

생산일자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투입량	비고
제 조 방 법			
기 타 사 항			
포장방법 및 단위		생산량	
작업자		유통기한	
생 산 중 특이사항			

【관계법령】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3. “농외소득 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관련 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제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 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등의 품질·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국·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농업인에게 대부할 수 있다.

□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교육

2.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횡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식품 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 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세우고 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2016.6.22.>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운영인력 인건비, 생산제품 품질검사 및 HACCP 관리 등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가공창업교육 과정 개설 및 진행에 따른 강사비 및 운영비, 가공센터 제품 생산을 위한 재료비 등
- 제4조(기능), 제15조(회의 및 의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연간 습식가공품 10톤, 건조가공품 1톤, 반찬가공품 1톤 생산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인상율은 연 1.4%로 산정함.

나. 추계 결과

- 세입 : 80,000원(1일 사용료) × 150일 = 12,000천원
- 세출

내역	산출기초	예산액(천원)	비고
합계		143,000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000	101-04
일반운영비	자가품질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료, HACCP 유지관리비, 피복비	20,000	201-01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0,000	201-02
	가공창업교육 운영	20,000	201-03
재료비	농산물, 포장재, 소모성기구, 교육재료	50,000	206-01

다. 재원조달 방안

- 군 자체 재원, 2022년 당초예산 편성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연락처	(033) 330 - 130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가공장비 사용료 수입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세 출		143,000	143,450	143,920	144,390	144,870	719,63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000	33,450	33,920	34,390	34,870	169,630
일반운영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재료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원 조달		143,000	143,450	143,920	144,390	144,870	719,63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43,000	143,450	143,920	144,390	144,870	719,63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143,000	143,450	143,920	144,390	144,870	719,63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